

국회의원(김정재) 징계안

의안 번호	13384
----------	-------

요구연월일 : 2025. 9. 30.

요 구 자 : 신장식 · 서왕진 · 백선희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김준형 · 이해민 · 강경숙
박은정 · 김재원 · 김선민
박찬대 · 박상혁 · 김현정
김승원 · 김용만 · 이강일
한창민 · 민병덕 · 김남근
의원(21인)

주 문

국회의원(김정재)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야 할 공동의 규범이 있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에서도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서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은 특히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 동법 제155조(징계)에서는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와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재는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신장식 의원을 향해 “신장식, 재수 없는 새끼”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 또한, 2025년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중대한 망언을 함.

다. 국회의원 김정재는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도 자신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으며,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회 통합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과 언급된 해당 지역 주민 모두

에게 큰 상처를 남겼음. 이는 공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임. 이처럼 국회의원 김정재는 본회의에서 거듭된 망언으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함.

라.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김정재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9호와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